#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 Ⅰ. 머리말

중국은 1980년대 경제개방 이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세계 경제의 블랙홀”로서 놀랄만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왔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단순히 제조공장으로서 역할을 넘어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수출 세계 1위, 수입 2위로 전 세계 물동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을 거치는 화물의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과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것은 물론이다. 비확산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수 선진 국가들은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발전 및 그 이행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냉전시대 이후, 비확산 체제를 거부하고 미사일 및 관련 민감 기술 등을 여러 국가에 이전하여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198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시작으로 1992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2004년 핵공급국그룹(NSG)에 잇따라 가입하면서 비확산 수출통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관련 법 규정을 수립하여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는 비교적 최근 발전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국제 교역규모 및 수출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 수출통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중국정부가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파트너이며 중국에서 생산 및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 Ⅱ. 법적근거

### 1.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중국 대외무역법은 국가안보, 공공이익 보호, 중국이 가입 또는 서명한 국제체제나 협정의 의무사항 이행 등을 이유로 특정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1] 또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이익에 저하될시 서비스의 수출입까지도 제재 및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2]

同 법에 따라 국무원(State Council) 산하의 무역관련 기관, 즉 상무부는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물품과 기술, 서비스의 통제리스트를 제정, 개정, 공고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수출입까지도 특별히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3] 수출입이 제한된 품목은 수출입 허가요건을 부과함으로써 관리되며 관련기관의 수출입허가 없이는 수출입을 할 수 없다.[4]

또한 무역 활동시 밀수, 수출입 허가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 및 변조, 법규정상 요구되는 조사·검역의 거부, 기타 법 규정 위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5] 이러한 금지 행위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형사법에 따라 처벌토록 한다. 상무부는 이러한 금지행위자에 대하여 1년에서 3년까지 관련 무역행위에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6] 또한 법규를 위반하여 대외무역 규정을 기만한 者는 상무부의 발표에 의해 일반에 공개된다.[7]

수출입 제한 및 금지 물품 불법 수출입자의 경우, 범죄가 구성요건이 성립할 시에는 형사법,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세관에서 처벌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에 수출입 제한 및 금지 기술 불법수출입자의 경우 상무부에 의해 벌금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구성요건 성립 시에는 형사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물품 불법 수출입자에게는 추가적으로 관련 기관에 의하여 최대 3년까지 수출입허가 금지, 관련 품목 수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8]

---

1) 중국 대외무역법 제16조. 同 법의 비공식 영문판은 중국 호남성인민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http://enghunan.gov.cn/Business/Administration/BusinessLawsRegulations/Other_Laws/200809/t20080928_117534.htm).
2) *Ibid,* 제26조.
3) *Ibid,* 제18조, 제28조.
4) *Ibid,* 제19조.
5) *Ibid,* 제34조.
6) *Ibid,* 제63조.
7) *Ibid,* 제36조.
8) *Ibid,* 제61조.

## 2. 핵수출통제규정[9]

(The Regulation of the PRC on Control of Nuclear Export)

동 규정은 1997년 제정, 발효되었으며 중국이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의무[10]를 다하기 위해 엄격한 수출통제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1]. 또한 2006년 개정을 실시하여 통제물자 및 관련기술이 중국의 보세창고, 보세구역, 수출가공지역 등 세관 특별감독관리지역 및 보세지역에서 수출시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통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해당 물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통과, 환적, 운송 역시 동 규정을 참고토록 명시하였다.[12]

핵 수출통제규정에 의거, 중국의 핵 수출은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3]

① 수입국 정부는 중국에서 공급된 품목과 그 생산물 등을 의도적으로 핵관련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② 수입국 정부는 중국에서 공급된 품목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적절한 실물 보호조치를 취한다.
③ 수입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적 보장협정을 체결한다.(단, 이미 자발적으로 IAEA와 협정을 맺은 국가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수입자는 중국원자력기구(CAEA: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의 서면 동의 없이 중국에서 공급된 품목을 제 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⑤ 수입정부는 중국 정부의 동의없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된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이용하여 농축도가 20%를 초과하는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수입자 또는 수입국이 상기 원칙을 위반, 또는 핵 확산 위협을 인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관련기관과 협동, 관련 물품 및 기술의 수출을 중지시키고 세관에 이를 서면 통보할 수 있다.[14] 또한 동 규정에 의거, 세관은 수출자에게 해당 수출 품목에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출자에게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 상무부의 증명서 발급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15]

중국의 핵 수출은 국무원에 의해 지정된 단체 또는 개인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16], 수출허가 신청 시에도 국무원에 의해 지정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CAEA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9) 중국 대외무역법의 하위규정으로 1997년 9월 11일 제정, 2006년 11월 9일 개정된 바 있다.
10) 중국은 1992년 핵확산방지조약(NPT : Nonproliferation Treaty), 1997년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2004년 핵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에 가입하였다.
11) 또한 동 규정의 통제범위는 "선물, 전시, 과학기술 협력 및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12) 중국 핵수출통제규정 제23조. 同 규정의 비공식 영문판은 NTI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http://www.nti.org/db/china/engdocs/excon97.htm).http://politics.people.com.cn/BIG5/1026/5116042.html). 단, 이는 1997년 제정된 내용으로 2006년 새로이 개정된 핵수출통제규정의 영문판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13) *Ibid,* 제5조.
14) *Ibid,* 제17조.
15) *Ibid,* 제16조.
16) *Ibid,* 제6조.

동 규정은 NSG 통제리스트 Part I 통제품목을 모두 반영한 통제리스트를 첨부하고 있으며 리스트에 등재된 물품 및 관련 기술에 모두 적용된다. 통제리스트는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 State Administration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ce)[17], 상무부, 외무부, 세관 및 기타 관련기관과 함께 CAEA가 국무원에 제출하여 개정할 수 있다. 동 규정을 위반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법 또는 관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3.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The Regulation of the PRC on Export Control of Dual-Use Nuclear Goods and Related Technologies)

이 규정은 1998년 핵관련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 테러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 국가 안보 및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18]

중국은 핵관련 이중용도 품목에도 핵 수출과 동일하게 3가지 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19] 수입자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핵 확산 및 테러 행위 연루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이미 발급된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관련 기관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20]

핵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자는 상무부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21] 수출시 상무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22] 상무부는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허가를 발급하게 되며 수출자는 이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3] 또한 수출자는 동 규정에 따라 핵관련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수출에 대해 내부통제체제를 수립해야 하며, 계약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최소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러한 서류에 대해 조사 및 사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4] 동 규정에 의거, 세관은 수출자에게 해당 수출 품목에

---

17) 기존에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OSTIND : Commission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ce)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여왔다. COSTIND는 지난 '08년 3월, 산업정보화부(MII :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zation)에 합병된 이후 SASTIND로 그 명칭을 개명하였다. 또한 그 지위도 부(Ministry) 수준에서 국(Bureau) 수준으로 상승되었으며 SASTIND의 핵에너지 관리부분에 대한 통제권 일부를 에너지국가위원회(National Energy Commission)에 이관하기도 하였다.

18)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제1조. 同 규정의 영문판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http://cys2.mofcom.gov.cn/aarticle/policyreleasingcenter/200801/20080105348201.html).

19) *Ibid,* 제6조.

20) *Ibid,* 제17조.

21) *Ibid,* 제7조.

22) 동 규정은 제28조에 의거, 특별 관세지역, 보세지역, 보세창고 등에서의 수출에도 적용되며, 통과, 환적, through-shipment 역시 이 규정에 적용된다.

23) *Ibid,* 제15조.

24) *Ibid,* 제18조.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출자에게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 상무부의 증명서 발급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25]

동 규정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 용도로의 전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캐치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무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에 대한 일시적 통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6] 또한 상무부는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독단적으로 혹은 다른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수출을 긴급 중지 시키고 조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필요시 세관에 연락해 세관에서 조사토록 할 수도 있다. 세관 관리구역이 아닌 경우는 품목을 봉하거나(seal up) 압수(impound)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27] 동 규정에 첨부되어 있는 핵관련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통제리스트는 NSG 통제리스트 Part II와 동일하며 상무부는 CAEA 및 관련 부처와 함께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28]

## 4.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기술수출통제규정
(Regulations of the PRC on Export Control of Missiles and Missile-related Items and Technologies)

동 규정은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및 사회공공 이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다. 동 규정은 첨부된 통제리스트의 수출에 적용되며 이는 선물, 전시, 과학 기술적 협력,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여러 형태로 기술이 이전되는 것도 포함한다.[29] 또한 상무부[30]의 허가 없이는 이러한 통제품목을 수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31] 미사일 관련 물품 및 기술 수출자는 반드시 상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 없이 수출한자는 상무부 또는 관련기관의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32]

핵 수출 규정과 유사하게 수입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미사일 관련 품목을 기 진술한 최종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중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33] 만약 수입자가 이러한 조건을 어길시, 또는 확산의 위험이 있는

25) *Ibid,* 제16조.
26) *Ibid,* 제19조~제20조.
27) *Ibid,* 제22조.
28) *Ibid,* 제26조.
29)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제1조~제2조. 同 규정의 영문판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http://cys2.mofcom.gov.cn/aarticle/policyreleasing/200709/20070905093191.html).
30) 단, 동 규정 제5조에 의거, 통제품목 중 일부의 경우 군수품수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출토록 하고 있다.
31) *Ibid,* 제4조.
32) *Ibid,* 제7조, 제21조.
33) *Ibid,* 제6조.

경우, 국무원은 旣 발급된 허가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이를 세관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34] 상무부는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허가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이 결정되는 경우 세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35] 수출자는 허가서를 세관에 제시해야 한며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절차를 마치고 세관의 관리 및 통제를 수용해야 한다.[36]

동 규정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 용도로의 전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캐치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무부는 관련기관과 함께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Central Military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37] 동 규정에 첨부되어 있는 통제리스트는 MTCR 통제리스트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일부 차이가 있다. 상무부는 관련기관과 함께 통제리스트를 개정,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38]

## 5.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

(Regulations of the PRC on the Administration of Controlled Chemicals)

동 규정은 통제 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시민 안전 보호 및 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으며 통제 화학물질의 제조, 마케팅, 사용에 종사하는 者들은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표는 본 규정에서 말하는 '통제 화학물질'의 그룹을 나타낸 것이다.[39]

<표 1> 화학물질 통제 리스트

| 구 분 | 내 용 |
|---|---|
| **[Schedule 1]** |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
| **[Schedule 2]** | 화학무기 제조에 전구체(precursor)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
| **[Schedule 3]** | 화학무기 제조에 주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
| **[Schedule 4]** | 폭발성 물질과 순탄화수소 화합물(pure hydrocarbon compounds)을 제외한 단일유기화학물질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ttee) 산하 기구인 중국화학무기금지조약이행국(NCWCIO : National CWC Implementation Office)이 이러한

34) *Ibid,* 제15조.
35) *Ibid,* 제12조.
36) *Ibid,* 제14조.
37) *Ibid,* 제16조~제17조.
38) *Ibid,* 제23조.
39)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 제3조. 同 규정의 영문판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http://cys2.mofcom.gov.cn/aarticle/policyreleasing/200709/20070905093298.html).

통제 화학물질의 국내관리 및 수출통제 주무관청으로서 특히 CWC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등 역할하고 있다. 통제 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자는 NCWCIO에 그 용도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NCWCIO의 조사 및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40]

[Schedule 1] 화학물질의 경우 제한된 용도[41]로만 제조, 사용 수출입 할 수 있으며 제조, 사용시에는 NCWCIO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NCWCIO에서 지정한 특정 시설에서만 제조될 수 있으며 해당 특정시설에 NCWCIO의 사용 승인서를 제출하여야만 해당 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의 사본은 다시 NCWCIO에 제출하여야만 한다.[42]

[Schedule 2], [Schedule 3] 화학물질과 [Schedule 4] 中 인, 황, 불소를 포함하는 유기화학물질의 제조 역시도 NCWCIO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화학물질의 제조시설을 신축, 확장, 재건축 시에도 NCWCIO의 승인이 필요하다.[43]

NCWCIO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지정한 업체만이 [Schedule 1], [Schedule 2], [Schedule 3]의 화학물질 및 제조기술, 전문장비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업체가 이러한 품목을 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44] [Schedule 1], [Schedule 2], [Schedule 3]의 화학물질 및 제조기술, 전문장비 수출입은 모두 허가대상이며, NCWCIO에 수출입 승인 신청한 후, 발급된 승인서를 포함한 기타 제반 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수출입허가를 받아야만 한다.[45]

그밖에도 동 규정에는 통제 화학물질의 보관 및 처분,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 위반시 처벌 수위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첨부되어 있는 통제리스트는 CWC 통제품목 리스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호주그룹(AG) 통제 품목도 [Schedule 2]에 포함되어 있다.

---

40) *Ibid,* 제5조.
41) 과학적 연구, 의학적 치료, 의약품 제조 및 방위 용도로 제한된다.
42) *Ibid,* 제6조, 제12조.
43) *Ibid,* 제7조~제8조.
44) *Ibid,* 제14조.
45) *Ibid,* 제15조~제18조.

## 6.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Measures on Export Control of Certain Chemials and Related Equipment and Technologies)

동 규정은 특정 화학물질 및 관련 장비・기술(이후, 특정 화학물질 등)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및 사회/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다. 동 규정은 첨부된 통제리스트 품목의 수출에 적용되며 이는 선물, 전시, 과학 기술적 협력,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기타 다른 형태로 기술이 이전되는 것도 포함한다.[46]

동 규정은 통제리스트 상 품목의 수출에는 허가가 필요하며[47], 수출자는 상무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48]. 특정 화학물질 등의 수출허가 담당기관은 상무부이며 상무부는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또한 발급이 결정되는 경우 상무부는 세관에 서면 통보하게 된다.[49] 수출자는 수출시 허가서를 세관에 제시해야 한며 세관의 절차에 따라 통관을 완료해야 한다.[50]

수입자는 중국으로부터 공급된 특정 화학물질 등이 화학무기의 저장, 처리, 제조, 취급 또는 화학무기 전구체의 제조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임을 보증해야 하며,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 기술한 최종용도 또는 최종사용자를 변경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51]. 만약 수입자가 이러한 조건을 어길시, 또는 확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이미 발급된 허가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이를 세관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52].

동 규정은 통제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이 아니더라도 우려 용도로의 전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캐치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무부는 필요시 관련기관과 함께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53]. 동 규정에 포함된 통제리스트는 호주그룹(AG) 통제리스트와 동일하며 필요시, 상무부는 기타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

46)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제2조. 同 규정의 영문판은 비엔나 중국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http://cys2.mofcom.gov.cn/aarticle/policyreleasing/200709/20070905093415.html).
47) *Ibid,* 제4조~제5조.
48) *Ibid,* 제7조.
49) *Ibid,* 제12조.
50) *Ibid,* 제14조.
51) *Ibid,* 제6조.
52) *Ibid,* 제15조.
53) *Ibid,* 제16조~제17조.

## 7.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Regulations of the PRC on Export Control of Dual-Use Biological Agents and Related Equipment and Technologies)

동 규정은 이중용도 생물작용제 및 관련 장비, 기술(이하, 이중용도 생물작용제 등)의 수출통제 강화, 국가안보 보호, 사회/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으며 앞서 기술한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동 규정 제23조에 이중용도 생물학작용제 등을 수입하여, 재수출할 때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정도를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동 규정은 역시 첨부된 통제리스트 품목의 수출에 적용되며 선물, 전시, 과학기술적 협력,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기타 다른 형태로 기술이 이전되는 것도 포함한다.[54] 통제리스트 상품목의 수출에는 허가가 필요하며[55], 수출자는 상무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56]. 이중용도 생물작용제 등의 수출허가 담당기관은 상무부이며 상무부는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또한 발급이 결정되는 경우 상무부는 세관에 서면 통보하게 된다.[57] 수출자는 수출시 허가서를 세관에 제시해야 한며 세관의 절차에 따라 통관을 완료해야 한다.[58]

이중용도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자는 해당 품목이 생물무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해야 하며,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 기술한 최종용도 또는 최종사용자를 변경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59]. 만약 수입자가 이러한 조건을 어길시, 또는 확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이미 발급된 허가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이를 세관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60].

동 규정은 통제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이 아니더라도 우려 용도로의 전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캐치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무부는 필요시 관련기관과 함께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61]. 동 규정에 포함된 통제리스트는 호주그룹(AG) 통제리스트와 거의 동일하며 필요시, 상무부는 기타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통제리스트를 개정, 국무원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을 수 있다.[62]

---

54)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제2조. 同 규정의 영문판은 중국 비엔나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http://www.chinesemission-vienna.at/eng/dbtyw/fks/t127627.htm).
55) *Ibid,* 제5조.
56) *Ibid,* 제6조.
57) *Ibid,* 제12조.
58) *Ibid,* 제14조.
59) *Ibid,* 제7조.
60) *Ibid,* 제15조.
61) *Ibid,* 제16조~제17조.
62) *Ibid,* 제23조.

## 8. 군수품수출관리규정 (Regulations of the PRC on Administration of Arms Export)

동 규정은 통합 군수품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적정한 수준의 군수품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1998년 1월 발효되었으며 지난 2002년 대폭 개정된 바 있다. 동 규정에서는 "군수품 수출"이란 통제리스트에 명시된 품목의 수출을 의미하며 군사용도로 사용되는 장비, 특수 제조시설, 물자, 기술, 관련 서비스의 수출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63] 참고로 이 규정은 경찰장비(police equipment)의 수출에도 적용된다.[64]

동 규정은 SASTIND를 중국의 군수품 수출 관리·감독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65] 군수품 수출 시에는 다음의 원칙들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66]

① 수입국의 국방 역량 강화에만 이바지해야 함
② 특정 지역 또는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됨
③ 수입국 내정 간섭 불가

군수품 수출을 위해서는 SASTIND로부터 군수품 수출 사업운영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범위 내에서 군수품 수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업체를 군수품무역업체(Arms Trading Companies)라고 하는데 군수품 무역업체는 법규에 따른 SASTIND의 요청시 관련 서류 및 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하며[67] 군수품 수출에 있어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68]

① 국가안보, 사회/공공 이익 저하
② 불공정한 수단으로 경쟁 우위 선점
③ 중국 법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 침해
④ 문서의 위조, 변조, 부정 수단으로 문서 획득, 승인서 등 문서의 불법 이전

중국은 군수품 수출에 있어 여러 번에 걸친 허가 절차를 밟도록 규정, 군수품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군수품 수출자는 계약체결 前, 계약체결 後, 또한 실제 품목의 수출 前에 각각 SASTIND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69] 군수품수출통제리스트는 자체적인 통제리스트로 WA 통제리스트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국무부는 필요시 同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

63) 군수품수출관리규정 제2조. 同 규정의 영문판은 중국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http://www.gov.cn/english/laws/2005-07/25/content_16975.htm).
64) *Ibid,* 제29조.
65) *Ibid,* 제3조.
66) *Ibid,* 제5조.
67) *Ibid,* 제7조~제8조, 제11조.
68) I*bid,* 제22조.
69) *Ibid,* 제13조~제17조,

## 9.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

(Decree No.29, 2005 of Ministry of Commerce and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n Administrative Measures on Import and Export License of Substances and Technologies of Double Functions)

동 규정은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 허가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세관법,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관련규정이란 “핵수출통제규정”,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미사일및이사일관련물품·기술수출통제규정”,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 “특정화학물질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등을 의미[70]하며 이러한 규정 하에 통제되는 품목을 동 규정에서는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이라 통칭한다.[71]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허가증 관리는 상무부에서 주관하며 그 집행현황을 감독 및 조사하여 규정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까지도 상무부에서 책임으로 되어있다.[72] 수출입허가증은 상무부의 쿼터&허가증사무국이 전국의 허가증발행 업무를 통일·관리하고 동 사무국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각 지역의 허가증 발행기관이 허가증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통제리스트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뿐 아니라 통과, 중계, 운송까지도 모두 수출입허가증을 신청 대상이다. 또한 통제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이 아닐지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캐치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수출과정에서 인지하는 경우, 즉시 관련 부처에 보고하고 계약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73]

수출입자는 세관에 수출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은 수출자에게 해당 수출입 품목에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또한 세관은 수출자에게 허가요건에 해당지 않음을 증명하는 상무부의 문서(즉, 비해당 증명서) 발급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수출입자가 수출입허가증 또는 비해당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통관 수속을

---

70) 실제로는 화학물질전구체관리규정(Regulations on the Administration of Precursor Chemicals)도 관련규정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마약 제조와 관련된 화학물질을 통제하는 규정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는 거리가 있는바, 본문에서는 관련 내용의 언급을 생략한다.

71)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 제2조. 同 규정의 영문판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중문판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http://www.mofcom.gov.cn/column/print.shtml?/b/c/200512/20051201263308). 이 규정은 중국 최초로 전략물자의 종합적인 통제규정 및 통제리스트를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규정과 차별화되며 그 의미가 깊다.

72) *Ibid,* 제3조.

73) *Ibid,* 제6조, 제8조.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74] 한편, 수출입업자는 반드시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 문서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75] 동 규정의 통제리스트는 관련규정의 통제리스트와 거의 유사하며, 필요시 상무부는 세관총서와 공동으로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76]

# Ⅲ. 통제지역 및 통제품목

## 1. 통제지역

중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를 수출입통제 대상지역으로 한다. 특별히 우려 대상국으로 공개·지정한 국가는 없으며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라고 해서 신속허가 등의 허가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 2. 통제품목

중국의 전략물자 통제품목은 핵비확산조약(NPT)[77], 핵공급국그룹(NSG)[78], 쟁거위원회(ZC)[79], 화학무기금지협약(CWC)[80] 및 호주그룹(AG)[81]의 통제품목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82]의 통제품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다만 바세나르 협정(WA)의 통제품목은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재래식 무기에 관련하여서는 중국 군수품수출관리규정에 포함된 자체적 통제리스트를 이용하여 통제하고 있다. 즉, 자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WA 통제품목의 경우는 캐치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83] '07년 12월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통제품목 리스트 카탈로그[84]에 따르면 중국의 통제품목은 총 816개로 <표 2>는통제품목을 대분류한 것이다.

---

74) *Ibid,* 제7조, 제9조.
75) *Ibid,* 제30조.
76) *Ibid,* 제4조.
77) NPT는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취득을 금지하고, 평화적 이용의 원자력 활동이 핵무기 개발, 제조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해 검증받는다. 중국은 1992년 NPT에 가입하였다.
78) NSG는 원자력전용품목과 핵 개발,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을 통제하는 다자협의체이다. NSG에는 우리나라 등 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NSG에 가입하였다.
79) 쟁거위원회는 NPT에서 규정하는 "핵 용도로 특별 설계된 품목"을 구체적으로 핵물질과 원자로, 중수, 우라늄농축시설 등 핵 개발, 제조용 품목을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List)으로 정했다.
80)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획득, 보유, 축적, 이전 등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다. 중국은 1993년 CWC에 서명하였다.
81) AG는 화학무기 전구체, 생물작용제 및 화학·생물무기의 생산 장비 및 관련기술을 통제하는 다자협의체이다.
82) MTCR은 WMD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와 그 개발, 생산용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다자협의체로서 1987년에 발족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4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83) '08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바세나르체제 아웃리치 그룹과의 회의에서 중국은 향후 WA 이중용도 품목을 아우르는 통제리스트를 개발할 예정이라 밝힌바 있다.
84) 2007년 상무부 및 관세청 고시 제116호로 그 내용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나, 영문판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http://www.mofcom.gov.cn/aarticle/b/g/200802/20080205383540.html).

<표 2> 중국의 통제품목 리스트

| | | | |
|---|---|---|---|
| 이중용도 품목 (816) | 민감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750)** | 핵 | **152** |
| | | 핵 이중용도 | **162** |
| | | 생물 이중용도 | **144** |
| | | 통제 화학물질 | **64** |
| | | 특정 화학물질 | **37** |
| | | 미사일 관련 | **185** |
| | | 기타 | **6** |
| | 마약 제조가 가능한 화학물질전구체 (58) | Part I | 31 |
| | | Part II | 4 |
| | | Part III | 6 |
| | | 특정 국가 | 16 |
| | 방사능 동위원소 (8) | | 8 |

통제품목은 각 규정에 붙임 문서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통제리스트와 비교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핵수출통제규정 통제리스트

NSG 통제리스트 Part I 통제품목(원자력 전용품목)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등재된 물품 및 기술은 모두 통제된다. CAEA가 SASTIND, 상무부, 외무부, 세관 및 기타 관련기관과 함께 국무원에 승인을 받아 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 나.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통제리스트

NSG 통제리스트 Part II와 동일하며 등재된 물품 및 기술은 모두 통제된다. 상무부는 CAEA 및 관련 부처와 함께 통제 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 다.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기술수출통제규정 통제리스트[85]

MTCR 통제리스트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일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리스트는 두 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1은 미사일 및 기타 운반시스템(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로켓 및 무인대기권내 비행체 포함)과 이를 위해 특별 설계된 품목 및 기술이, Part 2에는 Part 1 품목과 관련된 물품 및 기술이 등재되어 있다. Part에 따라 수출허가 절차가 상이하여 Part 1은 군수품수출관리규정에 의거, Part 2는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기술수

85) 통제리스트는 상무부 웹사이트(http://preview.cys2.mofcom.gov.cn/accessory/200709/1189672252283.doc)에서 확인 가능.

출통제규정에 의거하여 각각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무부는 관련기관과 함께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 라.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 통제리스트[86]

CWC 통제품목 리스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호주그룹(AG) 통제품목도 [Schedule 2]에 포함되어 있다. 통제리스트는 Schedule 1에서 4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제2장의 [표1]을 참조토록 한다.

### 마.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통제리스트[87]

호주그룹(AG) 통제리스트와 동일하며 등재된 물품 및 관련 기술·장비가 모두 통제된다. 통제리스트는 두 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1은 10개의 통제대상 화학물질로, Part 2는 밸브, 펌프 등 관련 장비 및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필요시, 상무부는 기타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 바.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통제리스트[88]

호주그룹(AG) 통제리스트와 거의 동일하며 등재된 물품 및 관련 기술·장비가 모두 통제된다. 통제리스트는 중국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그 민감도에 따라 Part 1과 Part 2로 나누어져 있으며 Part별로 수출허가 처리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필요시, 상무부는 필요시, 기타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통제리스트를 개정, 국무원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사. 군수품수출통제리스트 고시

군수품수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2002년 국무부에서 공포한 군수품수출통제리스트는 총 14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기술·장비가 모두 통제된다. 필요시, 국무부는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

86) 통제리스트는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preview.cys2.mofcom.gov.cn/accessory/200709/1189673001244.doc).
87) 통제리스트는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preview.cys2.mofcom.gov.cn/accessory/200709/1189674218915.doc).
88) 통제리스트는 비엔나 중국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www.china-un.ch/eng/cjjk/cjjblc/jhhwx/t85347.htm).

<표 3> 군수품 수출통제 리스트 구성

| 구 분 | 내 용 |
|---|---|
| [Category 1] | 경화기 |
| [Category 2] | 대포, 기타 발사장치 |
| [Category 3] | 탄약, 지뢰, 수뢰, 폭탄, 전차영격미사일, 기타 폭발장치 |
| [Category 4] | 전차, 장갑차, 기타 군용차량 |
| [Category 5] | 군수용공업장비와 설비 |
| [Category 6] | 군함 및 전용장비와 설비 |
| [Category 7] | 군용비행기 및 전용장비와 설비 |
| [Category 8] | 로켓, 미사일, 군사위성 및 보조설비 |
| [Category 9] | 군수용전자기구급 발사제어, 거리측정, 과학, 미사일 유도/제어장치 |
| [Category 10] | 화약, 추진연료, 연소제 및 관련화합물 |
| [Category 11] | 군사훈련설비 |
| [Category 12] | 핵무기, 행물, 화학무기방호장비와 설비 |
| [Category 13] | 후방장비, 물질, 기타 보조군수용 장비 |
| [Category 14] | 기타 제품(1~13 품목의 부품/반제품/샘플, 생산/시험/측정/수리/계량/개조 등의 기술/설비/기술자료(S/W 포함)/서비스, 특수원재료와 보조재료 등 |

### 아.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 통제리스트[89]

동 규정의 통제리스트는 관련규정들의 통제리스트 품목을 집대성한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크게 Part I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입허가증 관리리스트와, Part II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할 만한 점은 Part II에 각 관련규정의 통제품목 外에도 각종 컴퓨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또한 군수품수출관리규정의 통제품목은 同 통제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필요시 상무부는 세관총서와 공동으로 통제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다.

89) 통제리스트는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exportcontrol.mofcom.gov.cn/fujian/051231fj03.xls)

# Ⅳ. 수출허가

## 1. 수출허가

통제품목의 수출 시에는 허가가 필요하며, 품목에 따라 그 허가기관 및 절차가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상무부에서 많은 통제품목의 허가심사와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통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단,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국무원이나 중앙군사위원회 등 상위 기관에 최종 비준을 얻어 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중국은 '07년 초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을 새로이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향후 중국의 수출통제 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하다. '07년도 개정으로 동 규정 제28조에는 특별 관세지역, 보세지역, 보세창고 등에서의 수출에도 수출통제가 적용됨이 명시되었고, 또한 통과, 환적까지도 통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전 캐치올 규정이 각 규정에 순차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수출통제 범위 확대 조항 역시도 규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즉, 향후 중국의 수출통제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강화되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품목의 수출허가 기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원자력 전용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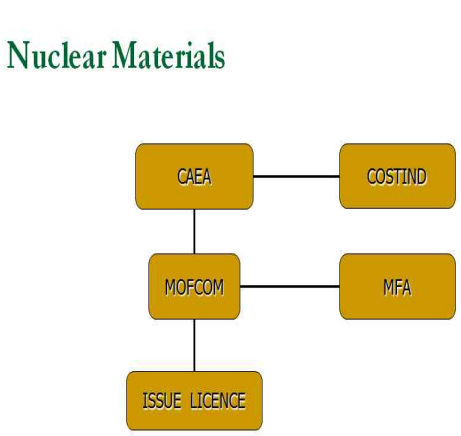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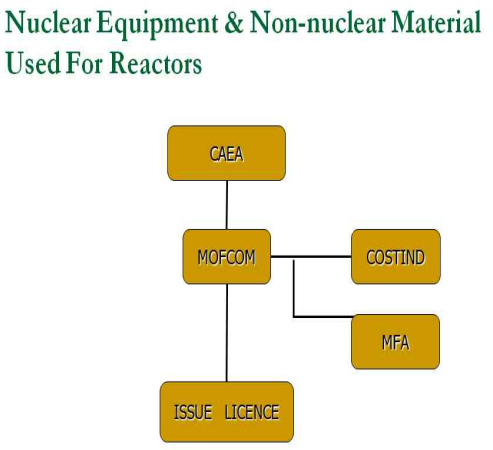


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자는 CAEA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CAEA의 1차 심사가 진행된다. CAEA는 이후 핵물질의 경우 SASTIND에서 재심사 하도록 조치하고, 핵 설비, 원자로용 비핵물질, 관련기술 등의 경우 상무부가 재심사하도록 조치하며 때로는 SASTIND와 공동 재심사하도록 하기도 한다. 만약 국가안보, 외교정책 등에 관련된 주요

수출사안인 경우 각 관련기관은 외무부와 상의해야하며, 필요시 국무원에 허가 건을 제출, 비준토록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수출허가는 상무부에서 발급되어 수출자에게 전달된다. CAEA의 1차 심사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근로일 기준) 이내, 이후 관련기관의 재심사 역시 15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단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재심사기관이 15일의 추가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각 심사 단계마다 그 결과를 수출자에게 통보토록 되어있다.[90] 단, 국무원에 제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상기 처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나. 핵관련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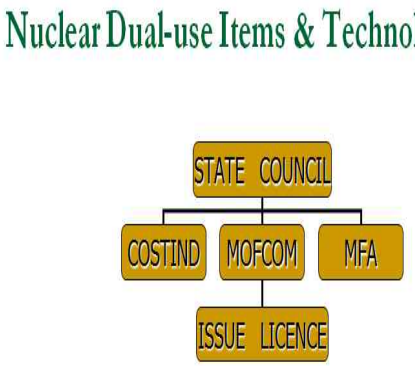


핵관련 이중용도품목 수출자는 상무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CAEA, 또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또한 대외정책 관련된 경우 외무부(MFA : Ministry of Foreign Affairs)와 상의하여 허가심사를 진행토록 한다. 상무부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근로일 기준) 이내에 허가를 처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단, 국가안보, 공공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안의 경우, 국무원에 허가 건을 제출, 비준토록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상기 처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91]

단, 전시회, 해외에서의 자가 사용, 검사,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특정 기간 이내 재반입되는 경우, 검사 및 수리 목적으로 수입되었다가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 등은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 관련서류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92]

90) 핵수출통제규정 제10조.
91)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제11조~제12조.
92)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제9조.

## 다. 민감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생화학, 미사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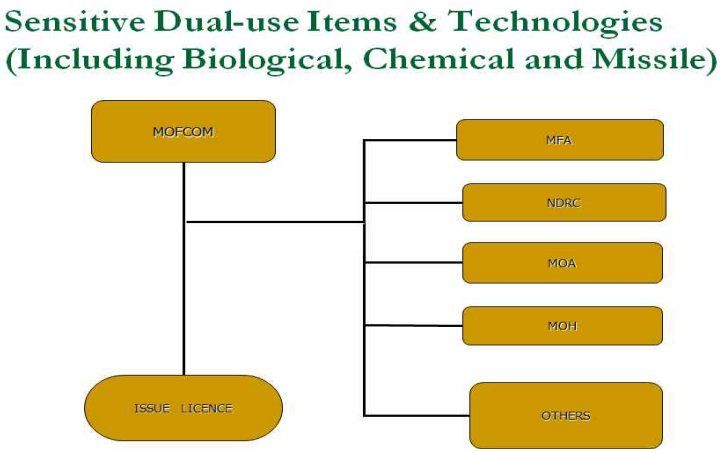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기술수출통제규정",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으로 통제되는 품목의 수출자는 상무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93]

미사일 관련품목의 경우 상무부는 단독으로, 또는 국무원 산하 관련부처나 중앙군사위원회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접수일로부터 45일(근로일 기준) 이내에 허가를 처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공공이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의 경우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에 허가 건을 제출, 비준토록 해야 한다.[94]

특정 화학물질 및 관련 품목의 경우에도 상무부는 단독으로 또는 필요시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접수일로부터 45일(근로일 기준) 이내에 허가를 처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주요 사안의 경우 국무원에 허가 건을 제출, 비준토록 해야 한다.[95]

이중용도생물학 작용제 및 관련품목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무부는 단독으로 또는 필요시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Part I 품목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근로일 기준) 이내, Part II의 경우 45일에 허가를 처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주요 사안의 경우 국무원에 허가 건을 제출, 비준토록 해야 한다.[96] 국무원 등 상위 기관으로 제출된 주요 안건의 경우에는 처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93) 단,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기술통제규정의 통제리스트 Part 1의 경우는 군수품수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출된다.
94)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제10조~제11조.
95)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제10조~제11조.
96)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제10조~제11조.

## 라. 통제 화학물질 및 관련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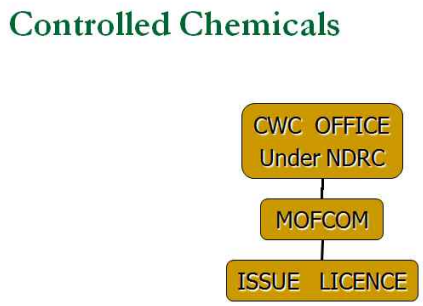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으로 통제되는 통제화학물질 및 관련품목의 경우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제조, 사용 등에 있어서도 NDRC의 하위기관인 NCWCIO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출 시에는 수출신청서 및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97]를 NCWCIO에 제출해야하며, NCWCIO는 이를 심사하여 Schedule 1의 경우 국무부에 해당 건을 제출, 비준토록 하며, Schedule 2~3의 경우 직접 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승인서를 제시해야만 상무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98] 다만, 통제 화학물질의 허가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

## 마. 군수품

군수품 수출자는 총 3번에 걸쳐 SASTIND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 또는 계약서 작성시 SASTIND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SASTIND는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하의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상기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담당한다.

승인이 결정된 경우, 군수품무역업체는 외국 거래자 측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後 한번 더 동일 기관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SASTIND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승인 이전에는 수출계약서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주요 사안의 경우 SASTIND는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하의 관련부처와 심사를 진행한 후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에 허가 건을 제출, 비준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수품의 수출 前 상기 절차에서 발급된 승인서와 함께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SASTIND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출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세관은 이 수출허가서에 따라 통관을 진행토록 해야 한다.[99]

---

97) Schedule 1의 경우 해당 품목을 과학적 연구, 의학적 치료, 의약품 제조 및 방위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제3국으로 재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수입국 정부가 확약·발행한 문서, Schedule 2의 경우 해당품목을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제3국으로 재수출되지 않을 것임 수입국 정부가 확약·발행한 문서가 필요하다.

98)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 제17조~제18조.

### 바.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허가증 발급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자는 각 관련 규정[100]에 의거하여 수출입 허가를 득한 이후 상무부의 쿼터&허가증사무국으로부터 허가증 발급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각 소재지의 허가증 발행기관[101]에 허가증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수출입자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부처에서 발급받은 허가서와 함께 수출입허가증 신청서, 수출입자의 공문서(자사 소개), 수출입자의 허가증수령자의 신분증을 제출함으로써 수출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증 발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근로일 이내에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02]

중국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 통관 가능한 "1인가 1허가증" 제도와 유효기관 내 특정 세관에서만 통관 가능한 "1허가증 1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03] 수출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통상 1년이다.[104]

박람회 및 견본 수출의 경우에도 일반적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비매용 전시품의 경우 전시회 끝난 6개월 이내에 국내로 재반입토록 해야 하며 세관은 재반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로 제한한다.[105]

## 2. 최종용도 통제

중국은 캐치올 대상 국가나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각 관련 규정에 캐치올 조항을 포함토록 '03년부터 순차적 개정을 추진하여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이더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통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106] 각 규정의 캐치올 조항은 단어의 선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여러 규정을 아우르는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의 캐치올 조항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99) 군수품수출관리규정 제13조~제17조.

100) "핵수출통제규정",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미사일및이사일관련물품·기술수출통제규정",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 "특정화학물질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101) 허가증 발행기관은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의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으며 영문판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으나 중문판 리스트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 (http://exportcontrol.mofcom.gov.cn/aarticle/Nocategory/200512/20051201262457.html).

102)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 제13조~제14조.

103) *Ibid,* 제13조.

104) *Ibid,* 제26조.

105) *Ibid,* 제19조~제20조.

106)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제19조,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기술수출통제규정 제16조, 특정화학물질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제16조,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제16조,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 제8조.

**제8조** 수출업자는 유관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 예정인 물품 및 기술이 대량 파괴무기(WMD) 및 그 운송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거나(knows) 또는 인지해야 하는 경우(should know), 혹은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 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물품 및 기술이 통제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수출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출업자는 수출과정에서 만일 수출 예정인 물품 및 기술이 WMD 및 그 운송수단에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는 즉시 국무원의 관련 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계약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암호품목의 수출입허가

중국은 상업용암호품목관리규정(Regulations for the Administration of Commercial Encryption)에 따라 암호품목 및 기술의 수출입 등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암호기술은 국가 기밀로서 그 연구・생산・판매・사용이 통제된다. 암호품목의 연구・생산・판매・사용은 모두 국가상업용암호관리국(OSCCA : Office of the State Commercial Cryptography Administration)이 지정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수출입 시에는 OSCCA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Ⅴ. 집행 및 벌칙

## 1. 위반에 대한 벌칙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수출입 제한 및 금지 물품 불법 수출입자에 대해서는 중국 세관에서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토록 되어있으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형사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한편 수출입 제한 및 금지 기술 불법 수출입자의 경우 상무부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고 불법 수익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수익은 몰수된다. 만약, 불법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불법 수익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는 1만 위안에서 5만 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형사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추가적으로 상무부는 수출입 제한 및 금지 물품 및 기술 불법 수출입자들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수출입허가 금지, 1년에서 3년 이하의 관련 품목 수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07]

또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무역 서비스 불법 종사자의 경우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토록 한다. 단, 관련 법 규정에 적당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무부가 수출입 제한 및 금지 기술 불법 수출입자의 기준과 동일하게 시정명령, 벌금 및 몰수 조치할 수 있다. 또한 1년에서 3년 이하의 관련 무역 서비스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종사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108]

무역 활동 시 밀수, 수출입 허가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 및 개조, 법규정상 요구되는 조사·검역의 거부, 기타 법 규정 위반행위 등을 금지[109]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 행위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무부는 해당人에 대하여 1년에서 3년까지 관련 무역행위에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110] 만약,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형사법에 따라 처벌토록 하며 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무역규정을 기만한 者는 상무부의 발표에 의해 일반에 공개된다.[111] 관련규정별 처벌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7) 중국 대외무역법 제61조.
108) *Ibid,* 제62조.
109) *Ibid,* 제34조.
110) *Ibid,* 제63조.
111) *Ibid,* 제36조.

## 가. 핵수출통제규정

동 규정을 위반하고 통제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는 경고를 발부하고, 불법 수익의 1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불법 수익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불법 수익은 몰수한다. 만약,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형사 조사를 받아야 한다.[112] 허가를 위조, 변조, 판매, 구매한 경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형사 조사를 받아야 한다.[113]

## 나.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동 규정을 위반하고 핵관련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법의 관련 조항에 의거 처벌된다. 기술의 경우, 상기 핵수출통제규정상 통제품목 위법수출시와 동일한 처벌수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114]

허가를 위조, 변조, 판매, 구매한 경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형사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획득한 경우 상무부는 해당 수출허가를 취소하고 불법 수익의 1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불법 수익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불법 수익은 몰수한다. 만약,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형사 조사를 받아야 한다.[115]

## 다.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기술수출통제규정

통제대상 미사일 품목을 무허가 수출하거나, 허가된 수출범위에서 벗어난 수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상의 밀수, 불법사업운영, 국가기밀 누설 등 조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상무부가 관세법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하거나, 경고, 불법 수익의 몰수, 불법수익의 1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역업허가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16]

---

112) 핵수출통제규정 제18조.
113) *Ibid,* 제19조.
114)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제23조.
115) *Ibid,* 제24조.
116) 미사일및미사일관련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제18조.

허가를 위조, 변조, 판매, 구매한 경우는 형법상 국가기관의 공문서, 증서, 도장을 위변조 및 매매한 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상무부가 관세법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토록 하고, 동시에 무역업허가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17] 한편 상무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획득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하며, 불법 수익의 1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무역업허가를 중지하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다.[118]

## 라.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

동 규정을 위반하여 통제대상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 각 지방(省)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법 제조의 경우 20만 위안 미만의 벌금, 불법 사용의 경우 5만 위안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사안이 심각한 경우 긴급 제조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119]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하고 통제대상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및 불법 수익을 몰수하고 불법 수익의 1배 초과, 2배 미만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20]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데이터를 숨기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검사 및 감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만 위안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안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공공안전을위한행정처벌규정[121]에 의거 행정 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범죄가 성립된다면 형법에 따라 형사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122]

## 마.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허가없이 특정 화학물질 등을 수출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 화학물질 등을 수출하는 자는 형사법 밀수 조항, 불법사업운영, 국가기밀 누설 등 조항에 의하여 형사조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심각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관련조항에 의해 처벌되거나 상황에 따라 상무부로부터 불법 수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과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상무부는 또한 추가적으로 무역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23]

---

117) *Ibid,* 제19조.
118) *Ibid,* 제20조.
119) 화학물질통제관리규정 제21조~제22조.
120) *Ibid,* 제23조.
121)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Public Security.
122) *Ibid,* 제25조.
123)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제18조.

수출허가를 위조, 변조, 판매, 구매하는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획득한 경우 형법상 불법사업운영 또는 국가기관의 공문서, 증서, 도장을 위변조 및 매매한 죄로 형사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심각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관련조항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상무부는 이에 추가적으로 무역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24]

## 바.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허가 없이 이중용도생물작용제 등을 수출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 화학물질 등을 수출하는 자는 형사법 밀수 조항, 불법사업운영, 국가기밀 누설 등 조항에 의하여 형사조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심각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관련조항에 의해 처벌되거나 상황에 따라 상무부로부터 경고, 불법 수익의 압수,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무부는 또한 추가적으로 무역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25]

수출허가를 위조, 변조, 판매, 구매하는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획득한 경우의 처벌은 특정화학물질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과 동일하다.[126] 거짓이나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출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상무부는 해당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불법 수익을 압수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무역업 허가를 중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127]

## 사. 군수품수출관리규정

군수품무역업체가 관련 활동에 대한 서류 및 데이터를 제시를 거부할시 SASTIND는 이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경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정해진 시한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군수품무역업 권한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128]

군수품무역업체가 문서의 위조, 변조, 부정 수단으로 문서 획득, 승인서 등 문서를 불법 이전하였거나, 승인된 사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불법경영죄 또는 국가기관의 공문서, 증서, 도장을 위변조 및 매매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만큼 심각성이 크지 않은 경우는 SASTIND가 경고, 불법 수익 몰수, 동시에 불법 수익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만약 불법 수익이 없거나 10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군수품수출 사업 운영권은 중지 또는 취소된다.[129]

---

124) *Ibid,* 제19조.
125) 이중용도생물학작용제및관련장비・기술수출통제규정 제18조.
126) *Ibid,* 제19조.
127) *Ibid,* 제20조.
128) 군수품수출관리규정 제24조.

국가안보 및 사회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단으로 경쟁우위를 점하거나, 중국 법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SASTIND에서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처벌하도록 하고 동시에 군수품수출 사업 운영권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만약 형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에 의거 형사 조사를 받을 수 있다.[130]

군수품수출 사업운영권 없이 군수품 수출 활동을 한 경우는 SASTIND에 의해 해당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형법 위반이라면 관련 조항에 의거, 형사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성이 크지 않은 경우는 SASTIND가 경고, 불법 수익 몰수, 동시에 불법 수익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만약 불법 수익이 없거나 10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1]

### 아.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

여러 규정을 아우르는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에서는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무허가 수출시 세관법 등 각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단, 형법 위반시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토록 한다.[132]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을 위변조 또는 매매할 경우에, 형법의 불법 경영죄 또는 국가기관의 공문서, 증서, 도장을 위변조 및 매매한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며, 형사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세관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부당한 수단으로 수출입허가증을 획득한 경우, 상무부는 법에 따라 해당 허가증을 취소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33]

비매용 전시품을 규정에 따라 재반입 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이 이를 확인하고 말소하게 된다. 세관은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상황을 상무부와 출국 경제 무역전시회 승인 기관에 통지한다. 상무부는 해당 전시회 조직 기관과 참가 기관에 경고 또는 전시회 조직 기관을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34] 상기 명시된 위반행위로 행정처벌 또는 형사 처분 받은 자에 대해서 상무부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내에 위법 행위자가 관련한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135]

---

129) *Ibid,* 제25조.
130) *Ibid,* 제22조.
131) *Ibid,* 제26조.
132)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 제35조~제36조.
133) *Ibid,* 제37조.
134) *Ibid,* 제38조.
135) *Ibid,* 제39조.

특이할만한 점은 모든 기관과 개인은 상무부 또는 세관에 수출입업자가 국가 유관 법률, 행정법규 및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상무부와 세관은 반드시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법에 따라 규정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조사내용에 사실에 속할 경우, 주관기관은 유관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6]

## 2. 처벌사례

집행 및 벌칙 조항이 복잡하나마 갖춰져 있는데 반해 중국정부는 그간 실제 처벌사례의 공개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국제사회는 중국의 적극적 집행의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2006년 이후 몇 건의 처벌 사례를 상무부 홈페이지 공개하여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4건의 처벌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표 4> 상무부 공개 처벌사례

| 공개일자 | 업체명 | 위법행위 | 처벌 |
|---|---|---|---|
| 2006. 05. | 길림성 도문시에 위치한 화학경공업공사 | 시안화나트륨 10톤을 불법수출 | 통제품목 몰수 및 5만 위안의 벌금 부과 |
| 2006. 10. | 상해에 위치한 상해지통화공유한공사 | 불화수소칼륨의 의도적 불법수출 | 통제품목 몰수 및 1만 위안의 벌금 부과 |
| 2007. 08. | “ | “ | 무역업허가 취소 |
| 2008. 03. | 산동 쯔보지역에 위치한 쯔보베트화학공업설비유한회사 | 유리반응탱크 불법수출 | 45만 위안의 벌금 부과 |

136) *Ibid,* 제31조.

# Ⅵ.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중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 및 과학기술을 갖춘 국가로서 WMD 및 미사일 확산을 반대하고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에 관한 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안보 및 사회 공익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의 연구, 생산, 수출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내부자율준수프로그램(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9월에는 ICP 확대를 위하여 가이드라인[137]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4가지 방법으로 ICP 구축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1. ICP 도입방침의 명료화 및 제도관리 강화

기업은 ICP를 도입하여 국가수출통제 법규정을 자발적으로 집행하며 국가안보 및 사회공익을 지켜야한다. 또한 ① 최고위층에서의 ICP 제정 ② 상의하달(Top-down) 방식으로 ICP 도입, ③ 전체구성원의 참여, ④ 제도의 지속적 관리 방침으로 수출통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방침으로 책임 있는 기업의 이미지를 세우는 한편, 무역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회피하고 줄여나가 국제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부단히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한다.

## 2. 기본 원칙

① 관련 법규준수 원칙 : 수출통제 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전제 조건임을 서약하여야 한다.
② 독립성의 원칙 : 기업의 수출통제 의무는 영업 이익보다 상위에 위치해야 하며 기업의 ICP는 기업 경영관리제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전면 통제원칙 : 기업은 수출통제 주관부처의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 통제대상 품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

## 3. 기본 요소

상무부가 권장하는 ICP의 기본 요소는 다음 6가지이다.

137) 중국 상무부고시 2007년 제69호로 상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영문판 요약본만 제공하고 있다.
(http://english.mofcom.gov.cn/aarticle/policyrelease/gazettee/200711/20071105234689.html)

### 가. 자율준수 정책성명 채택

기업은 수출통제 정책 및 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기업 발전을 위한 경영전략의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정책성명에는 기업이 수출통제 법 규정을 준수할 것, 고위 관리층은 기업의 ICP를 지지할 것, 기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출통제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자발적으로 맹세하고, 직원들은 수출통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성명에는 반드시 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토록 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공개토록 한다. 또한 기업 내부관계자들은 모두 이러한 성명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나. 조직 기구 설립

ICP 운영을 위한 조직기구를 설립, 주관 부문과 관계자의 직책을 명확히 구분토록 한다. 조직기구 설립에 있어서는 ICP 조직시스템 설치, ICP 기구의 역할, ICP 담당(전담 또는 겸임) 직원의 직책과 권한 연락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독립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책임자에게 필요시 수출행위를 중단하거나, 정부 관련기관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다. 또한 한 사람이 심사를 책임지고 판단하는 것을 기피하여 효율적인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다. 심사절차 제정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한다. 심사는 수출품목이 통제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품목의 수출이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UN 제재국이나 기타 민감한 국가인지 여부,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가 우려스러운지 여부, 고객의 지불방식이나 운송 노선등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또한 적극적 통제 이행을 위하여 심사 실무의 흐름을 정부 관련부처와 연계토록 권유하고 있다.

### 라. 관리 소책자 편성

기업은 관리 소책자를 보급하여 실무진들이 ICP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 소책자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 규정 개요, 기업의 정책성명, 조직 기구, 심사절차 및 고려요소,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통제대상 물품 또는 기술, 각종 관련서류 및 양식, ICP 자문방식, 담당 직원의 명단 및 연락처, 관련 정부부처의 연락처 등을 담는다.

### 마. 교육 및 연수 실시

수출활동 관련 모든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교육은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정부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 ICP 담당직원은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정부 주관 수출통제정책 발표, 교육, 세미나에 참가하도록 한다.

### 바. 관련서류 보관

수출기록, 정부와 교신내용, 고객 정보 및 교신 문서, 허가신청 서류, 허가심사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전화, 팩스, email 및 기타 방식의 교섭을 기록해야 하며 관련 무역 서류의 보관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업은 자체 내부 정관에 ICP를 반영, 운영을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 조치를 취하여 ICP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 4. 정부의 ICP 이행지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의 ICP 이행을 단계적, 다층적으로 지원한다.

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업의 ICP 도입을 지원
② ICP 시행을 허가상 특혜 부여의 주요 조건으로 하는 장려조치 마련
③ ICP 전문가 지원팀을 양성하여 법 규정, ICP 관련요건, 전문기술 등 관련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④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시행
⑤ 기업의 ICP 이행현황 감독

# Ⅶ. 요약 및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급부상하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출통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 개정된 핵관련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통제규정,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 등을 살펴보면 UN 안보리결의안 1540호의 요구에 맞춰 통제 범위를 통과, 환적 등까지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통상 8자리로 통용되고 있는 HS 번호에 2자리 숫자를 추가, HS 번호만으로 특별 통제 적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138] 즉, 법 규정에 있어서의 단계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은 최근 국제체제 및 주요국과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수출통제 세미나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2008년에는 베이징에서 바세나르체제 아웃리치 그룹과 회의를 갖는 등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07년에 ICP 가이던스를 발표하여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을 취급하는 업체에 ICP도입을 장려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불법수출 처벌사례를 공개하여 집행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그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수출허가 발급 절차도 대부분의 경우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되며 그 처리기간도 상당히 길어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이행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통제 선진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집행의지 역시 향상되고는 있으나 충분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2006년에서부터 2009년 3월 현재까지 공개된 처벌건수는 단 4건으로 중국의 교역규모에 비해 볼 때 상당히 부족하여 위반단속 및 처벌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통제제도 이행률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수출통제규정을 상위 법 규정으로 통합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더욱 강력한 집행의지를 표명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관원, 허가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 및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 산업계 대상 아웃리치 활동 및 홍보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ICP를 도입한 업체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여, ICP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138) CNS Observer紙 2007년 3~4월호.

# 참고문헌

『Export Control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ITS, 2005. 02.
『Chasing the Dragon』- (부제 : Assessing China's System of Export Controls for WMD-Related Goods and Technologies), Medeiros Evan S., RAND Corp., 2005.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안보통상연구』 제 1권 제 2호,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09.
'International Observer', CNS, 2007. 03~04.

<Web Sites and Pages>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
- 기계전기/첨단기술산업사 웹사이트 (http://cys2.mofcom.gov.cn/)
- 수출통제 웹사이트(http://exportcontrol.mofcom.gov.cn/)

<기타자료>
중국군축협회(CACDA) Li Genxin 사무국장 세미나 발표자료, 2007. 12. 4., 서울
중국군축협회(CACDA) Liu Xiaoming 과장 세미나 발표자료, 2008. 10. 8, 서울